해양수산부 공고 제2025-388호

# 2025년도「해양수산 창업·투자 지원사업」 지원 대상 통합 모집 공고

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 분야 창업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5년도「해양수산 창업·투자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, 관심 있는 해양수산 예비창업자, 창업기업, 중소·벤처기업 등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02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

# │. 사업 개요

## □ 사업 목적

○ 해양수산 분야 우수기술을 보유한 (예비)창업자와 유망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해양신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

#### □ 지원 분야

- ○「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」제12조(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)에 따른 해양수산 全 기술 분야<sup>\*</sup> 지원
  - \* 해양자원, 해양환경, 해양수산생명, 해양관측 및 예보, 해양공학(해양플랜트, 선박 공학, 레저·탐사장비), 해양재해/방재, 해안/항만물류, 해양안전/교통, 극지해양과학, 수산양식, 수산자원/어장환경, 어업생산/이용가공, 해양수산연구인프라

#### □ 사업 내용

사업명	프로그램	지원내용	지원대상	접수기간	페이지
해양 신산업 인큐	①해양수산 창업기획자 (액셀러레이터) 운영	창업기획자(액셀러레이터)를 통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 발굴 및 집중 보육 실시	(수행기관) 창업기획자 (보육기업)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	2/19(수)~ 3/6(목) 별도 모집공고 (4월 예정)	p.3
베이팅 지원	②블루 스타트업 지원사업	시제품 제작, 연구개발, 제품홍보 비용 등 지원 및 마케팅·홍보, 판로개척 컨설팅	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	별도 모집공고 (3월 예정)	p.13
투자 희망 기업 지원	③해양수산 투자 프로그램 패키지 지원	< 투자유치 컨설팅 > 투자실무, 자금조달 전략, 사업계획서 작성, IR 컨설팅 등 < 투자유치 활성화 > 투자기관 협의회를 통한 투자기회 제공, 투자상담회 및 팸투어 운영	· 창업·중소·벤처기업	별도 모집공고 (3월 예정)	p.18

- \* 전담기관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별도 모집공고 예정
- \*\* 1년 내 최대 2개 프로그램 수혜가능(단. 신청은 제한 없음)
- \*\*\* 3년 내 최대 1회 동일 프로그램 수혜가능 (예시) '23년 사업화자금 사업 수혜기업은 '25년 블루스타트업 지원사업 수혜불가
- \*\*\*\* 단, 유망 기업에 대한 원활한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해 투자 활성화 사업의 경우 중복 지원 여부 별도 결정 가능

# Ⅱ. 프로그램별 세부내용

# 1 해양수산 창업기획자(액셀러레이터) 운영

#### □ 프로그램 목적

○ 해양수산 분야에 특화된 **창업기획자(액셀러레이터, 수행기관) 운영 지원** 으로 유망 창업기업(보육기업) 발굴, 육성 및 투자유치 활동 전반을 지원

#### □ 프로그램 개요

- (지원 내용) 해양수산 전문 창업기획자 및 창업기업 지원
  - (창업기획자)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보육을 위한 운영 자금 지원

#### **― <창업기획자 지원항목>**

- (**인건비**) 참여 인력 인건비 지원
- (**운영비**) 유망기업 모집·선발, 교육·훈련, 멘토링, 자금지원, 투자IR 등 운영비
- (역량강화비) 해양수산 관련 특화 교육, 네트워크 구축, 기관 간 협업 등
- (보육기업) 초기자금, 교육·멘토링, 투자연계 등 창업 초기 안정화 및 성장을 위한 해양수산 전문 창업기획자 운영 프로그램 지원
  - \* 자금지원 및 멘토링 등 지원 내용은 기업별로 상이할 수 있음

#### - <보육기업 지원항목> --

- (자금지원) 기업별 초기자금 지원
- (**기업보육**) 기업별 멘토링, 투자자매칭, 사업화 지원 등
- (투자유치) 창업기획자 직접투자 또는 연계투자 지원

## ○ (지원규모)

- (창업기획자) 6개사, 기관별 약 2억 6천만원 이내 지원(일반 4개사 2.6억원, 로컬특화 2개사 2.3억원 총 15억원 지원)
- (보육기업)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초기 기업 총 54개 팀 이상 선발 및 육성
- \* 창업기획자 지원 금액 및 지원기업 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

#### □ 프로그램 운영

○ (창업기획자 선발) 해양수산 유망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발굴, 보육, 투자유치 지원을 수행할 6개사 선발(일반 4개사 26억원, 로컬특화 2개사 23억원)

#### <sup>-</sup> <선발기준> <sup>-</sup>

- (선정절차) 사전검토(KIMST) → 서류평가(평가위원회) → 발표평가(평가위원회) \* 서류평가에서 2배수 선정, 단, 신청 건이 2.5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평가 생략 가능
- (**가점**) '25년 중기부 TIPS(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) 운영사 해당 시 **가점 2점 부여**(서류평가 시 부여하며, 서류평가를 생략하는 경우 발표평가 시 가점 부여)
- (선정우대) '24년 최종평가 1순위 창업기획자는 동 사업 신청 시, 별도 평가 없이 우선 선발
- (**로컬특화**) 로컬 특화 창업기획자\*는 비수도권 지역에 본사(혹은 지사) 소재지를 둔 창업기획자를 주관기관으로 하고 유관기관, 지자체를 협력기관으로 하여 '주관기관-협력기관' 구조로 사업에 참여 가능
  - \* 최초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 등본 상 본사(혹은 지사) 소재지가 비수도권 지역인 기업

#### - <창업기획자 서류/발표평가 운영>

- 평가위원회 위원은 5인 내외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별 점수 중 최고, 최저 점수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를 평점으로 함
-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은 "탈락"으로 처리, 6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위에 따라 선정
- 평가항목 및 배점 (서류평가) 수행기관 역량(35), 프로그램 수행계획(50), 역량강화(15) (발표평가) 수행기관 역량(30), 발굴 및 선정(30), 프로그램 수행계획(20), 투자\*(10), 성과관리 및 일반관리(10)
  - \* 발표평가 항목중 투자의 경우 계량지표로 아래 표에 따라 점수 부여함

직접투자(5점)	후속투자(5점)
직접투자 금액 1억원~3억원이하(3점)	후속투자 금액 1억원~10억원이하(3점)
직접투자 금액 3억원초과(5점)	후속투자 금액 10억원 초과(5점)

- \*\* 평가방법,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
- (보육기업 선발) 창업기획자가 해양수산 분야 유망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 모집 및 선발(해양수산 신산업\* 및 전통산업 혁신 분야\*\* 중점 선발)
  - \*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에 따른 신산업(기술): ①친환경·첨단선박, ②스마트 블루 푸드, ③해양레저관광, ④해양바이오, ⑤해양에너지·자원
- \*\* 전통산업 혁신: 해운·조선·항만 등 전통산업에 디지털·친환경 <u>첨단기술</u>을 융합한 해양산업 분야(첨단기술: (디지털) AI, IoT, 빅데이터, 3D 프린팅 등 / (친환경) 탄소·오염 물질저감 기술 등)

- (선발 규모) 총 54개 팀 이상(창업기획자별 9개팀 이상)

#### < 선발기준 >

- (의무선발) 예비창업자 2개팀, 예비창업 및 초기창업기업(3년 이하) 70% 이상, 청년 기업 4개사 이상 의무 선발
  - \* 초기 창업기업: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기업, 청년기업: 대표자 만 34세 이하 기업
- (선발방식) 서류평가(3배수) 및 발표평가를 통한 2단계 평가를 통해 선발 단, 창업기획자의 발굴 능력 활용을 위해 창업기획자별 추천 1개 사는 서류평가 면제하며, 최종 보육기업 선정은 전담기관 검토 후 확정
- (신청자격)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
  - \* 공고일 기준 현재 창업 7년 이내인 자((개인)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, (법인)법인등기 부등본상 회사설립연월일 기준)
- (제외대상)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- ·기업의 부도, 휴·폐업 중인 경우 및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
  - ·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 - ·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
  - ·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   - \*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/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
  - ·신청기업, 대표이사 또는 수행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
  - ·동일(유사)한 아이템(기술)로 정부 창업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받고 있는 기업
- (**가점사항**) 가점항목에 따라 서류평가에서 가점 부여

가점 규모	가점 항목
3점	<ul><li>・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입상('22~'24)</li><li>* 수상 다음해부터 3년 간 최초 1회 한정(선발 시 가점 적용)</li></ul>
 1점	・'24년 블루 스타트업 우수기업 ・'23년 사업화 R&D 지원사업 우수 기업 ★ 최종평가 평균점수 80점 이상, 주관기관 ・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・해양수산 R&D 기술이전 우수기업

- \* 평가 기준은 창업기획자 내부 기준을 따르되, 최종 선정은 전담기관 확인(의무선발, 중복 지원 등) 필요
- \*\* 보육기업 모집은 해양수산창업투자시스템을 통해 공고하며, 창업기획자별 별도 신청·접수
- **(보육기업 지원)**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별 성과지표(KPI)\*를 설정하고,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보육프로그램\*\* 설계 및 운영
  - \* (성과지표) 예비창업자 신규창업, 고용, 투자유치, 만족도 점수 등
  - \*\* (보육프로그램) 교육/멘토링, 전문가 자문, 투자유치, 판로지원, 글로벌 지원 등

- (초기자금 지원) 창업기획자는 선정기업과 협약체결 후, 90일 이내에 8 천만원 이상(로컬특화의 경우 6천만원 이상)을 초기자금으로 지급
- \* 기업별 차등 지급 가능(단, 지급액 상한 15백만원), 창업기획자의 직접·지분·연계 투자와는 별도로 진행함
- \*\* 창업기획자는 초기자금 사용기준에 따라 자금이 적절히 사용되었는지를 관리·감독함
- (기업보육) 교육·멘토링, 시장검증, 판로지원 등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 특화 보육프로그램 운영과 기업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
- \* 보육대상 기업 중 해외진출·수출 희망 기업이 있을 경우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가능(단, 별도의 추가적인 예산 교부는 없음)
- (직접투자) 창업기획자 자체자금으로 보육기업에게 직접 투자
- \* 창업기획자별 총 100백만원 이상을 선발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(미이행 시 해당 금액을 사업비에서 환수), 사업종료 전까지 투자계약날인 필수
- (투자연계) IR 컨설팅, 투자기관 연계 등을 통한 투자유치 지원
- \* 보육기업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수행기관 별 데모데이 1회, 통합 데모데이 1회 이상 개최
- (사후관리) 보육기업 사후관리 방안 수립 및 지원, 사업 종료 후 2년 간 사업성과 모니터링 실시 및 요구자료 제출
- \* 보육기업 사후관리 후, 차년도 상반기에 전담기관에게 결과를 보고함
- \*\* 수행기관은 협약종료 후 2년간 사업성과 기초자료 제출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
- (창업설명회) 해양수산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사 개최
  - 초청강연, 창업 토크쇼, 창업상담 등 제공하여 해양수산 창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, 정보 공유 및 네트워킹 장 마련
    - \* 수행기관은 설명회 홍보 및 참석자 모집 등 협업 지원하고, 행사 초청 시 참여 협조
- (공동협업) 전담기관이 추진하는 프로그램 참여 및 지원
  - 창업 관련 행사(창업설명회·상담회, 간담회 등) 지원, 투자유망 기업 발굴 지원, 해양수산 투자심사역 양성교육 필수 참여 및 이수\* 등
    - \* 수행기관별 최소 3명 이상의 인력(사업 참여인력 중) 교육이수 필수
- (사업수행 실적보고) 전담기관 요청에 따라 월 1회 이상 프로그램 수행내용 및 실적 보고
  - \* 전담기관에서 추진점검회의 개최 시, 수행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참석 원칙

- (최종평가) 수행기관 성과목표 달성도, 기업보육 내용, 기업별 성과목표 달성도, 전담기관 간의 소통·협업능력 등을 평가
  - \* 평가결과 1위 창업기획자는 차년도 동 사업 신청 시, 별도 평가 없이 우선 선발
  - \*\* 최종평가는 수행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최종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일 경우. 심의를 통해 사업비 잔액 미지급 및 환수조치 할 수 있음

#### □ 수행기관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

- (신청자격)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전문 육성할 수 있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국내 법인
  -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
  - ② 대한민국 국적자가 창업기획자 (공동)대표여야 함
  - ③ 상근 전담인력 최소 2인 이상 확보\* (수행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로 지정)
  - 수행책임자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총괄 및 운영 경력 3년 이상 필수
  - 실무담당자는 액셀러레이팅 실무경력 3년 이상으로 사업참여율 50% 이상 필수
  - 타 사업 등으로 본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, 사업 수행 및 전담기관 간 협조 등이 원활하지 않을 시, 전담기관은 수행책임자 또는 실무담당자 등 참여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
  - ④ 자체 보육프로그램 및 관련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10개 이상 창업기업 투자 경험 필수
  - ⑤ 해양수산분야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국내·외 해양수산 유관기관, 전문 VC, 협력기관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 보유
  - ⑥ 실무경험을 보유한 벤처창업 관련 전문가, 투자자 등의 멘토단 구성 필요
- (제외대상)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- 기업의 부도, 휴·폐업 중인 경우
  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 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 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
  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 - \*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/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
  -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

## □ 신청방법

- **(신청기간)** 2025. 2. 19.(수요일)~3. 6.(목요일), 15시까지
- (신청방법)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(https://www.kimst.re.kr/startup) 공고·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서류 전산 접수
  - \* 접수마감일 15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 차단되어 접속 중이라 하더라도 추가 입력이 불가하므로 접수마감일 15시 이전에 신청 서류 전산등록이 완료되어야 함
  - \*\*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자 증가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권고
- **(신청서류)** 별첨1(일반:1-1, 로컬:1-2) 참고

연번	신청 서류(필수 제출)	비고
1	지원신청서(별첨 1 참조) * 로컬특화의 경우 주관기관, 협력기관 내용을 모두 작성하여 모두 제출	필수서류
2	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* 로컬특화의 경우 주관기관, 협력기관 서류 모두 제출	
3	창업기획자(액셀러레이터) 등록 확인증	
4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* 로컬 특화의 경우 주관기관, 협력기관 서류 모두 제출	
(5)	재무제표(최근 3년, '22~'24년) *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우선 제출 후 '24년 재무제표 제출	필수증빙
6	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* 로컬 특화의 경우 주관기관, 협력기관 서류 모두 제출	
7	대표자 및 참여인력 이력 증빙서류(학위, 경력 등) * 로컬 특화의 경우 주관기관, 협력기관 서류 모두 제출	
8	투자 실적 증빙자료(계약서 사본, 이체내역서, 주주명부 등) * 로컬 특화의 경우 주관기관, 협력기관 서류 모두 제출	
9	기타 증빙서류(가점 증빙, 투자재원 등)	해당 시

※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전담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허위 사실 발각 시, 사업 선정 취소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(제출한 자료는 일괄 반납되지 않음)

# □ 창업기획자 선정 절차 및 기준

○ (선정절차) 사전검토, 서류, 발표평가를 통해 수행기관 선정

사전검토		서류평가(생략가능)		발표평가
지원자격 검토	<b>→</b>	발표평가 대상 선정(2배수)	<b>→</b>	협약체결 대상 선정
전담기관		평가위원회		평가위원회

- \* 신청 건이 선정 대상의 2.5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평가 생략가능
- \*\* 평가점수 상위순위에 의해 선정하되, 동점 발생 시 수행기관 역량 점수가 높은 기관 우선 선정(단, 60점 미만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)
- \*\*\* (가점사항) '25년 중기부 TIPS 운영사가 창업기획자 수행기관으로 지원하는 경우 서류평가 가점 2점 부여(서류평가 생략 시 발표평가에서 가점 부여)
- (평가기준) 사업 목적 및 신산업분야 이해도, 프로그램 구성 등을 평가
  - 서류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

평가항목	세부 평가기준	배점	
	• 재무 현황	5	
수행기관 역량	• 참여인력 구성 현황	10	
(35)	• 액셀러레이팅 수행 실적 및 성과	15	
(33)	• 창업기업 보육 시설 조성 현황 및 보유 네트워크 우수성	5	
	• 유망기업 모집·발굴·선정 계획의 구체성	15	
프로그램 스해게회	• 해양수산 신산업 및 전통산업 혁신분야 창업기업 발굴 계획	15	
수행계획 (50)	• 창업기획자(액셀러레이터) 성과지표의 타당성, 적합성, 현실성	15	
(30)	• 보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일정의 타당성, 적합성	20	
역량강화	• 해양수산 신산업 및 전통산업 혁신분야 이해도 및 전문성 제고 방안 타당성	8	
(15)	• 해양수산 창업기획자(액셀러레이터) 역량강화 계획의 구체성	7	
합계			

- 발표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

평가항목	세부 평가기준	배점
	• 조직/참여인력(보유자격) 구성 등 조직·인력구성 적절성	10
수행기관	• 보육·투자 실적 등 창업기획자(액셀러레이터) 수행 성과 우수성	10
역량 (30)	• 보유 인프라 및 전문가·멘토 명단 구성의 전문성 *로컬 특화 창업기획자(액셀러레이터)의 경우, 지역 소재 협력기관(유관기관 및 지 자체)과의 협력성	10
	• 해양수산 신산업 및 전통산업혁신 분야 중심의 예비창업자·창업기업 홍보·발굴 계획의 구체성 및 적합성	10
발굴 및 선정	• 보육대상 기업 선정 계획의 적합성 및 공정성	10
(30)	• 예비창업자 지원 수 *로컬 창업기획자(액셀러레이터)는 지역 소재 (예비)창업기업(본사, 지사 포함) 선정 필수 여부	10

프로그램	• 창업기획자(액셀러레이터) 성과지표의 도전성, 적합성 - 보육 기업 수, 초기투자 및 후속투자 관련 지표 등 평가	10
수행계획 (20)	• 창업기획자(액셀러레이터) 프로그램 구성의 독창성 및 우수성 • 보육기업 교육·멘토링 계획의 구체성 및 기업 만족도 제고방안 타당성 • 창업교육·전담멘토링· 기타 프로그램 운영계획	10
투자	• 선발기업에 직접 투자 금액 최소 1억원 이상 *직접투자 금액 1억원~3억원 이하(3점), 직접투자 금액 3억원 초과(5점) **직접 투자의 경우, 사업종료 전까지 투자계약날인 필수	5
(10)	• 선발기업의 후속 투자 금액 최소 1억원 이상 *후속투자 금액 1억원~10억원 이하(3점), 후속투자 금액 10억원 초과(5점)	5
성과관리 및 일반관리 (10)	<ul> <li>성과관리 계획(후속 투자유치 계획 포함)의 적정성</li> <li>창업기업 수, 매출액, 고용창출, 투자유치, 지식재산권 확보</li> <li>초기투자 계획 및 후속투자 연계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</li> <li>일정, 산출물, 재무, 참여인력 등 일반 관리 분야</li> <li>공간, 초기자금 매칭, 전체 사업비 구성 및 운영 적정성</li> <li>사후관리 및 향후 연계 계획의 타당성</li> </ul>	10
	합계	100

] 추진절차		
구 분	시행주체	세 부 내 용
창업기획자 모집공고 및 선정 (2월~3월)	전담기관 (평가위원회)	<ul> <li>창업기획자 선정</li> <li>서류평가(2배수 선정), 발표평가를 통한 창업기획자 선정</li> <li>* 신청 건이 2.5배수 이하일 경우, 서류평가 생략</li> </ul>
Ţ		
기업 모집공고 및 선발(4월)	수행기관 /전담기관	• 창업기획자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이 내 기업 선발(9개팀 이상)
Û		
프로그램 운영 (4월~10월)	수행기관 /전담기관	<ul><li>맞춤형 보육프로그램 운영</li><li>창업설명회 개최(1회 이상)</li><li>월별 사업수행 내용 및 실적 점검</li></ul>
Û		
데모데이 (10~11월)	전담기관 /수행기관	<ul><li>보육기업 IR 및 투자검토 등 투자활동 지원</li><li>창업기획자, 보육기업, 전담기관 및 외부 전문가 간 교류의 장 마련</li></ul>
Ţ		
최종평가(12월)	전담기관 (평가위원회)	<ul><li>사업 최종평가 실시</li><li>프로그램 운영 결과 및 주요 성과보고</li><li>* 평가결과 1순위 창업기획자 차년도 우선 선발 적용</li></ul>

※ 일정 및 세부내용은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 □ 유의사항

- 동 프로그램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협약서 기재사항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선정 취소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의 횡령, 편취 등 용도 이외 사업비 집행 시 환수조치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
- 보육기업 모집 및 선발은 수행기관(창업기획자) 내부기준에 따르되, 평가계획과 선정결과를 전담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전담기관과 협의 후 최종 확정하여야 함
- 수행기관은 초기자금지원(사업비)과는 별도로 보육기업에게 총
   10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완료해야 하며, 투자 의무금액 미달성 금액만큼 정부출연금을 환수 조치함
- 선발된 예비창업자가 이미 사업자등록(혹은 법인설립)을 했거나, 보육 기업(또는 예비창업자)이 타인의 아이템 또는 기술을 모방하거나 도용한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,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보육 기업 및 해당 수행기관에 있음
- 선발 후, 중도 포기 기업이나 선정이 취소된 기업이 발생할 경우,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고,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육 대상을 충원하여야 함
  - \* 발표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육기업을 충원하며, 적절한 기업을 충원하지 못할 시, 서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충원
- 초기자금지원금(8천만원이상, 로컬특화의 경우 6천만원 이상)을 미지원하 거나, 지원받은 기업의 중도 포기 발생 시, 해당 금액은 불인정되며, 최종 사업지원금에서 환수 조치함
  - \* 단, 중도 포기로 인한 기업 추가 선정 시 해당 기업에 한하여 협약 종료 20일 전까지 집행 가능

- 사업비는 협약 체결 후 80%를 지급하며, 최종평가 후 나머지 20%를 지급, 최종평가 결과\*에 따라 잔액(사업비의 20%) 지급 여부가 결정
- \* 최종평가 결과 60점 미만일 경우 심의를 통해 잔액 미지급 및 사업비 환수 가능
- \*\* 수행기관의 예산 운영이 국비, 지방비 등 자부담 예산이 없는 경우, 잔금 지급 시점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음
-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, 예산운용 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전담기관과 사전협의 후 집행 가능
- 로컬 특화 창업기획자의 경우 협약 및 총 사업비 관리·집행 모두 주관기관에서 일괄 수행(협력 기관에 별도 사업비 교부 불가)

#### □ 문의처

소속	담당자	연락처	이메일
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창업투자팀	이지현 선임연구원	02-3460-0372	jihyeon@kimst.re.kr

## □ 프로그램 목적

- ㅇ 창업 3년 이내 초기 기업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위한 수출지원, 시제품 제작, 홍보 등 수요기업 맞춤형 자금 및 컨설팅 지원
- 블루 스타트업으로 선발된 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과 컨설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여 초기 사업성 확보 및 파로개척 지원

## □ 프로그램 내용

- (지원 규모) 총 20개 내외, 총 10억원(기업당 5천만원)
  - \* 정부지원금의 10% 이상 현금 부담
- (지원 내용) 초기 창업기업 사업성 확보를 위한 수요 맞춤형 컨설팅 및 사업화 자금 패키지 지워
  - 사업화 컨설팅 지원: 국내외 홍보·마케팅 또는 판로개척 컨설팅 제공

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
구분	컨설팅 기	지원 항목
十世	국내 사업화 컨설팅 지원 항목	해외 컨설팅 지원항목
홍보· 마케팅 컨설팅	① 브랜드/홍보/마케팅 전략 수립 등 ② 온라인/오프라인 마케팅 컨설팅 등 ③ 디자인·브랜드(BI/CI 등) 개발 컨설팅 ④ 기타	① 브랜드/홍보/마케팅 전략 수립 등 ② 지적재산권(국제특허 등) 출원 지원 등 ③ 해외 온/오프라인 마케팅 컨설팅 ④ 수출 관련 컨설팅(서류대행 등) ⑤ 수출용 포장패키지 기획 컨설팅 등 ⑥ 기타
판로 개척 컨설팅	<ol> <li>시장조사 및 분석 등</li> <li>공공판로 개척 지원</li> <li>유통채널 확대, 신규채널 확장 등</li> <li>B2C, B2B 판매전략 수립 및 적용</li> <li>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(기관 연계, MOU체결 등)</li> <li>국내박람회・전시 관련 컨설팅 등</li> <li>기타</li> </ol>	<ol> <li>1 시장조사, 마켓테스트 등 해외 POC</li> <li>② 권역별 해외 바이어 발굴 등</li> <li>③ 해외수출유통채널         (글로벌 플랫폼 입점 등)</li> <li>④ 해외 인・허가/인증(ESG 인증 등)</li> <li>⑤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        (기관 연계, MOU체결 등)</li> <li>⑥ 해외박람회・전시 관련 컨설팅 등</li> <li>⑦ 기타</li> </ol>

<sup>※</sup> 컨설팅 지원 항목은 기업별로 상이하며, 진단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- 사업화 자금지원: 시제품 제작, 연구개발, 제품 검증 및 홍보, 수출 등에 소요되는 사업자금 지원(1개사 당 5천만원 이내)

구분	지원 내용	비고
시제품 제작	• 재료비, 장비구매 및 시설대여, 위탁 제작 등	
수출사업화 지원	• 물류지원, 포장지원(수출에 한함)	II AIIII
연구개발/	• 시장조사, 기술개발, 해외바이어 매칭·컨설팅 등	사업비 지해기조에
바이어 발굴	·시영소시, 기술개설, 애되미이어 배영·신설당 등	집행기준에 따라 사용
제품 검증	•시험·분석, 상표·특허 획득, 인증 등	버니 기등   *선정 후 안내
기업 홍보	• 카탈로그, 동영상, 홈페이지 제작 등	
박람회 참가	•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, 부스 임차비(여비제외)	

- (성과목표) 업력별 성과 목표 제시 필요
  - 매출액 및 고용창출 목표를 필수로 제시하여야 하며, 시제품 제작, 인증 등 사업비 지원 항목에 따른 기업별 목표를 함께 제시
  - \* 예비 창업자의 경우, 협약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창업 필수

#### □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

- (신청자격)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
  - \* 접수 마감일 기준, 창업 이력이 없는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((개인)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, (법인)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설립연월일 기준)
- (제외대상)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기업의 부도, 휴·폐업 중인 경우 및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 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 - \*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/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
- 신청기업, 대표이사 또는 수행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동일(유사)한 아이템(기술)로 정부 창업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받고 있는 기업

#### □ 신청방법

- (신청기간) 별도 모집 예정(3월중)
- (신청방법)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(https://www.kimst.re.kr/startup) 공고·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서류 전산 접수
- (신청서류) 별첨2(창업 3년이내:2-1, 예비창업자:2-2) 참고

연번	신청 서류	비고
1	프로그램 신청서, 사업계획서	
2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피스 궤츠
3	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	필수 제출
4	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	
<u></u>	사업자등록증(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)	
6	최근년도('22~'24년) 결산 재무제표	창업기업
	*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우선 제출 후 24년 재무제표 제출	필수 제출
7	중소기업 확인서	
8	등본 및 신청자 명의의 사실증명서(총사업자등록내역)	예비창업자
9	신청자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, 본인신용정보조회서	필수 제출
10	신청기술 관련 지식재산권, 인증 서류 등	해당시 제출

- ※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전담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허위 발각될 시, 사업 선정 취소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(제출한 자료는 일괄 반납되지 않음)
- ※ 한국기업데이터를 통해 기업 신용정보를 조회하며, 조회가 안 되는 기업의 경우 필요 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제출을 추가 요청할 수 있음

## □ 지원대상 선정절차 및 기준

- (수행기관 선정) 본 사업에 적합한 컨설팅 업체 또는 컨설턴트를 보유하고 있는 협·단체 또는 컨설팅 수행 및 관리가 가능한 기관 선정
- (기업 선정) 사전검토, 서류평가, 발표평가 및 운영위원회를 통한 지원기업 선정(해양수산 신산업\* 및 전통산업 혁신 분야\*\* 중점 선발)
  - \*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에 따른 신산업(기술): ①친환경·첨단선박, ②스마트 블루 푸드, ③해양레저관광, ④해양바이오, ⑤해양에너지·자원
  - \*\* 전통산업 혁신: 해운·조선·항만 등 전통산업에 디지털·친환경 <u>첨단기술</u>을 융합한 해양산업 분야(첨단기술: (디지털) AI, IoT, 빅데이터, 3D 프린팅 등 / (친환경) 탄소·오염물질저감 기술 등)
- (사전검토) 신청서류 검토를 통한 단계별 자격요건 확인
  - \* ①접수 후 신청서류 여부확인 ②서류평가 후 세부자격요건, 제외대상 검토
- \*\* ①신청서류 미제출, ②자격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신청제외 대상인 경우 탈락조치하며, 후순위 기업 선정함(기타 특이사항은 발표평가 시 평가위원에게 제공)

- (서류평가)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한 발표평가 대상기업(1.5배수) 선정
- (발표평가)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기업별 점수 산정

#### <서류/발표평가 운영>

- 평가위원회 위원은 5인 내외 외부 전문가로 구성 평가 점수 상위순위에 의해 선정하되 동점 발생 시 업력이 낮은 기업 우선 선정 (단, 60점 미만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) 평가항목 및 배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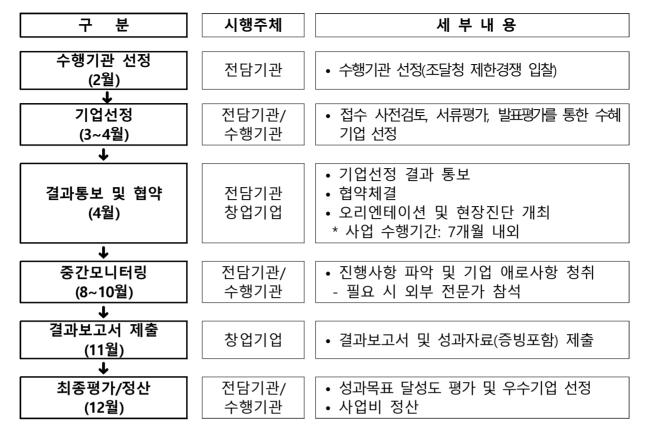
평가항목	세부항목	배점			
기업 역량 및	■ 경영역량(재무상태, 조직구성, 전문성 등)	10			
가입 극당 포 추진의지 (20)	■ 국내·외 동향파악 수준, 사전 기획을 위한 노력 등 * (수출기업의 경우) 글로벌 관계자 대상으로 소통, 홍보 등 진행 가능한 자료 등의 준비 완성도	10			
사업화 대상기술의	■ 사업화 대상기술 및 제품의 권리성 및 파급성	15			
우수성 (30)	■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및 독창성	15			
사업성	■ 목표시장 규모, 성장가능성 및 시장점유현황	20			
(40)	■ 추진목표의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	20			
사업비 (10)	■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	10			

- (오리엔테이션/현장진단) 선정기업 대상으로 기업진단 등을 통해 필요 컨설팅 내용 확정 및 컨설턴트 매칭(필요 시 현장방문)
- (가점사항) 가점항목에 따라 서류평가에서 가점 부여

가점 규모	가점 항목
3점	•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입상('22~'24) * 수상 다음해부터 3년 간 최초 1회 한정(선발 시 가점 적용)
1점	• '24년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발굴 우수기업 • '23년 사업화 R&D 지원사업 우수 기업 * 최종평가 평균점수 80점 이상, 주관기관 •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• 해양수산 R&D 기술이전 우수기업

- (중간모니터링) 진행사항 파악 및 애로사항 청취 등
- (최종평가) 성과목표 달성도 등 최종평가를 통한 과제 분류(우수, 적정, 미흡)
- (사업비 사용) 사업비는 협약 체결 후 70%를 지급하며, 30%는 사업비 집행 현황 및 중간점검 실시 후 지급함
  - \* 예비 창업자의 경우, 창업일 이후 사업비 지급
- (사업비 정산) 사업비 집행내역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창업 투자시스템에 입력 및 자금집행 모니터링

## □ 추진절차



※ 일정 및 세부내용은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## □ 유의사항

- 동 프로그램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선정 취소, 제재조치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전담기관은 지원기업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이외 사업비 집행 시 환수조치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
- 수행기관 및 창업기업은 협약 종료 후, 2년 간 매출액, 고용창출, 투자 실적 등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자료 제출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
- 타부처 창업지원사업(자금지원)에 동일·유사한 아이템(주제)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함
  - \* 사업종료 이후에도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도 전액 환수 조치함

#### □ 문의처

소속	담당자	연락처	이메일
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	김영진 연구원	02 2460 0274	kimboar@kimet roler
창업투자팀	삼중인 인丁편 	02-3460-0374	kimbear@kimst.re.kr

#### □ 모집 개요

- (모집 방식) 온라인 접수\*를 통한 수시 모집(3월~11월\*\*)
  - \*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(www.kimst.re.kr/startup)을 통해 신청서류 전산 접수
  - \*\* 목표가 조기에 달성된 경우, 전담기관에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음
- (모집 대상) 해양수산 분야 창업, 중소·벤처기업

#### □ 모집 프로그램

구분	프로그램 명	지원 규모	비고
투자유치 역량강화	•투자유치 컨설팅	7개 사 내외	50%이상 우선선정
자금확보 지원	•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(정기IR) • 팸투어 *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, 팸투어 선정기업은 IR컨설팅 패키지 지원	28개 사 내외	(이외 공모선정) * 우선선정으로 지원 대상이 확정되는 경우 공모선정 미진행
	총계	35개 사 내외	

- \* 정기IR은 4월, 5월, 6월, 9월, 10월 예정이며 운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\*\* 프로그램 별 지원 기업 수는 운영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## □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

- (신청자격)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해양수산 분야 창업·중소·벤처기업
- (제외대상)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기업의 부도, 휴·폐업 중인 경우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
- 신청기업, 대표이사 또는 수행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 - \*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/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

# □ 신청방법

- (신청방법) 해양수산 투자 프로그램 패키지 지원 통합공고(3월 예정)
- (신청서류) 별첨3 참고

연번	신청 서류	비고
1	해양수산 투자 프로그램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	
2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
3	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	필수 제출
4	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	할 기계
(5)	사업계획서 또는 제품·서비스 소개서(자유양식)	
6	사업자등록증	
7	법인등기부등본, 중소기업확인서, 벤처기업확인서	
8	팸투어 계획서	해당 시 제출
9	투자실적 및 증빙자료(계약서 등)	

- ※ 제출자료는 신청기업 선발 기준이 되는 자료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
- ※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전담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허위 발각 시, 사업 선정 취소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(제출한 자료는 일괄 반납되지 않음)
- ※ 한국기업데이터를 통해 기업 신용정보를 조회하며, 조회가 안 되는 기업의 경우 필요 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제출을 추가 요청할 수 있음

# 3-1 투자유치 컨설팅 지원

#### □ 프로그램 목적

○ 해양수산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교육, 맞춤형 컨설팅 등 투자 유치 역량강화로 기업 자생력 제고 유도

#### □ 프로그램 내용

- (지원 규모) 총 7개 기업
- (지원 내용) 기업진단, 투자유치 기본교육 실시, 자금조달 설계, 재무 분석, IR자료 작성 컨설팅, 투자사 매칭 및 IR 실시 지원 등

#### < 지원 항목 >

#### ㅇ 투자유치 컨설팅

- (기본교육) 투자의 이해, 투자 실무, 기업 성장단계별 자금조달 전략 등
- (기업진단) 기업현황, 사업계획, 성장로드맵, 투자 가능성 등 종합 진단
- (**맞춤형 IR전략**) 투자 컨설팅 모듈에 따라 진행(사업화전략, 재무분석 및 전략, 자금조달설계, 재무추정 및 기업가치평가, 사업계획서 및 IR자료 작성 등)
- (투자자 발굴·매칭 및 IR) 벤처투자자 대상 IR 및 피드백, 국내외 잠재 투자 기관 개별 접촉 및 투자 상담 매칭
- (사후관리) 투자자 상담결과 안내, 투자계약 지원
- IR 컨설팅
  - IR자료 작성 및 피드백, IR피칭 등 지원
- ※ 컨설팅 지원항목은 기업별로 상이하며, 진단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## □ 지원대상 선정절차

- (수행기관 선정) 사업화·재무 전략 수립 및 투자유치 컨설팅, 투자자 매칭 및 연계, 투자계약 지원 등에 특화된 수행기관 선정
- **(지원기관 선정)** 50%이상 우선선정(이외 공모선정\*)
  - (**우선선정**) 우수성과\*\*(25%이상) 및 예비 오션스타(25%이상) 우선선정
    - \* 우선선정으로 지원 대상이 확정되는 경우 공모선정 미진행
  - \*\* 창업기획자(액셀러레이터), 블루스타트업, 기술이전 등 성과 우수 기업(KIMST 내부 검토)
  - (공모) 사전검토, 현장진단, 선정평가(서류)로 선정

#### < 공모선정 절차 >

- ㅇ (사전검토) 필수 제출 서류 누락, 자격요건 등 확인
- o (현장진단) 수행기관이 내외부 전문가를 2인 내외로 구성하여 온/오프라인으로 컨설팅 목적, 추진의지, 역량, 기대효과 등 진단
  - \* 현장진단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실시(선정평가 시, 진단결과 제공)
- o (선정평가) 제출서류 및 현장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진 역량 및 참여의지, 기술 (제품)의 우수성 및 시장성, 사업성, 투자가능성 등 평가위원회 구성·평가(서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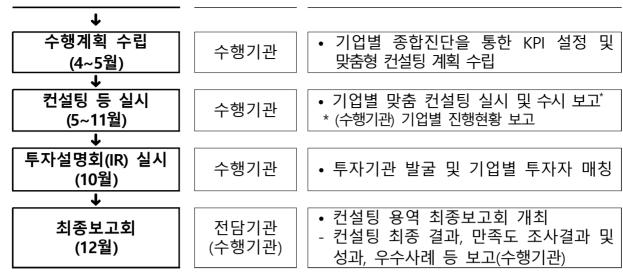
평가항목	점수
■ 경영진 역량(재무상태, 조직구성, 전문성 등) 및 참여의지	20점
■ 기술성(기술(제품)의 독창성, 개발단계 및 사업화정도 등)	30점
■ 시장성 및 사업성(시장규모, 성장성, 사업전략 타당성)	25점
■ 투자가능성 및 투자대비 회수가능성 등	25점

- (가점사항) 가점항목에 따라 선정평가(서류) 시 가점 부여

가점 규모	가점 항목
5점	• 예비오션스타 지정 기업('21~'24)
3점	•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입상('22~'24) * 수상 다음해부터 3년 간 최초 1회 한정(선발 시 가점 적용)
1점 	• '24년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발굴 우수기업 • '24년 블루 스타트업 우수 기업 • '23년 사업화 R&D 지원사업 우수 기업 * 최종평가 평균점수 80점 이상, 주관기관 •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• 해양수산 R&D 기술이전 우수기업

# □ 추진절차

·		
구 분	시행주체	세 부 내 용
수행기관 선정(2월)	전담기관	•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(조달청 입찰)
<b>.</b>		
수혜기업 우선선정 및 모집(3월)	수행기관 (전담기관)	<ul> <li>수혜기업 우선 선정</li> <li>예비 오션스타, 성과 우수기업(창업기획자, 블루스타트업 기술이전 등) 우선선정</li> <li>수혜기업 공모 선정</li> <li>해양수산 투자 프로그램 패키지 지원수시 모집(온라인 접수)을 통한 선정</li> </ul>
<b>↓</b>		
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(4월)	수행기관 (전담기관)	<ul> <li>선정평가(4월)</li> <li>사전검토, 현장진단, 선정(서류)평가를 통한 수혜기업 선정</li> <li>협약체결</li> <li>* 수행기관이 검토 승인, 전담기관에 사후보고</li> </ul>



- ※ 계약기간 동안 IR컨설팅 수시 지원
- ※ 일정 및 세부내용은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 □ 유의사항

- 동 프로그램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사업 신청, 지원 취소 및 제재조치 등을 받을 수 있음
- 수행기관 및 보육기업은 협약 종료 후, 2년 간 매출액, 고용창출, 투자 실적 등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자료 제출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

### □ 문의처

소속	담당자	연락처	이메일
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창업투자팀	김예나 연구원	02-3460-0373	ynkim212@kimst.re.kr

# 3-2 해양수산 투자 활성화

## □ 프로그램 목적

- 해양수산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와 관심도를 제고하고, 유망기업 발굴 및 투자유치 기회 제공 등을 통해 투자 성과 창출
  - \*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 운영, 해양수산 투자동향 분석, 투자유치 실적조사·통계, 투자심사역 양성 등 추진

## □ 프로그램 내용

- (정기 IR) 해양·수산펀드 운용사 등 해양수산 분야 투자를 희망하는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업 IR 기회 제공
- (수시 투자 상담회) 투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 등을 발굴하여 투자 유치 시점을 고려한 유망기업-투자기관 수시 투자 상담회 개최 \* KIMST 내부검토 및 선발로 진행(공고 대상 아님)
- (기업 팸투어) 투자기관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기술·제품시연, 사업 아이템 검증 및 사업장 규모·제조설비 파악 등 투자 상담
- **(투자심사역 양성과정)**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관의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
  - \*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 회원사, AC, VC 대상 운영

## □ 지원대상 선정절차

- **(수행기관 선정)** 본 사업에 적합한 컨설팅기관(업체 또는 컨설턴트)을 보유하고 있는 협·단체 또는 컨설팅 수행 및 관리가 가능한 기관 선정
- **(지원기관 선정)** 50%이상 우선선정(이외 공모선정\*)
  - (우선선정) 우수성과\*\*(25%이상) 및 예비 오션스타(25%이상) 우선선정
    - \* 우선선정으로 지원 대상이 확정되는 경우 공모선정 미진행
  - \*\* 투자유치 역량강화 우수기업(KIMST 내부검토)
  - (공모) KIMST, 수행기관, 외부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월 1회 내외 서류평가 및 선정

#### < 평가기준 >

#### o 투자기관 협의회

평가항목	점수
■ 경영진 역량(재무상태, 조직구성, 전문성 등)	20점
■ 기술성(기술(제품)의 독창성, 개발단계 및 사업화정도 등)	30점
■ 시장성 및 사업성(시장규모, 성장성, 사업전략 타당성)	25점
■ 투자가능성 및 투자대비 회수가능성 등	25점

#### ㅇ 기업 팸투어

평가항목	점수
■ 경영진 역량(재무상태, 조직구성, 전문성 등)	15점
■ 기술성(기술(제품)의 독창성, 개발단계 및 사업화정도 등)	25점
■ 시장성 및 사업성(시장규모, 성장성, 사업전략 타당성)	20점
■ 투자가능성 및 투자대비 회수가능성 등	20점
■ 현장방문평가(제품시연 가능성, 제조설비 확인 필요성 등)	20점

#### ㅇ 기타사항

- 신청 기업이 없거나 월간 2개 사 이하일 경우, 평가를 이월하여 진행할 수 있음

# □ 추진절차

구 분	시행주체	세 부 내 용	
수행기관 선정(2월)	전담기관	• 수행기관 선정(조달청 제한경쟁 입찰)	
<b>—</b>			
수시 모집 및 평가 (3월~12월)	수행기관	<ul> <li>온라인 접수를 통한 상시 모집(3~11월)</li> <li>월별 평가 실시</li> <li>신청 기업이 없거나 월간 2개 사 이하일 경우, 평가를 이월하여 진행할 수 있음</li> </ul>	
<b>+</b>			
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 운영 및 통계 (3월~12월)	수행기관	<ul> <li>협의회 정기IR 개최(4, 5, 6, 9, 10월 예정)</li> <li>해양수산 투자동향 분석 및 실적통계</li> <li>투자 유망기업 발굴 및 투자자 연계 등</li> </ul>	
<u> </u>			
수시 상담회/팸투어 (3~11월)	수행기관	• 수시 투자 상담회 <sup>*</sup> 및 팸투어 실시 * KIMST 내부검토·선발(공고 대상 아님)	
<b>+</b>			
투자심사역 양성 교육 (10~11월)	수행기관	• 투자심사역 양성 교육(연 1회)	
최종보고회 (12월)	수행기관 전담기관	• 투자 활성화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- 사업 추진결과, 투자실적, 사업 개선사항 등 보고(수행기관)	

※ 일정 및 세부내용은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 □ 유의사항

- 동 프로그램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사업 신청, 지원 취소 및 제재조치 등을 받을 수 있음
- 수행기관 및 보육기업은 협약 종료 후, 2년 간 매출액, 고용창출, 투자 실적 등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자료 제출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

# □ 문의처

소속	담당자	연락처	이메일
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창업투자팀	김예나 연구원	02-3460-0373	ynkim212@kimst.re.kr